

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006-01

<http://www.mifaff.go.kr>

양 곡 관 리 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10100100101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총 목 차

양곡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
양곡관리법 시행령 별표	6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6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87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28

양곡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목 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第1章 總則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11
제2조(定義)	제2조(곡류등)		12
	제2조의2(양곡연도)		13
第2章 糧穀의 관리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14
제4조(糧穀의 買入 및 先金支給등)	제3조(생산자등의 범위)		
	제4조 삭제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16
제5조(糧穀買入價格등의 決定)	제5조의2 삭제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17
제6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9조(政府管理糧穀의 販賣)	제9조의2 삭제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판매)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제13조 삭제		18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 자격기준)	20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기준)	21
제11조(糧穀의 輸出入)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제1조의5(시장가격의 기준)	22
제12조(米穀등의 輸入許可등)	제14조(수입의 허가)		23
제13조(輸入糧穀의 관리등)		제2조(미곡수입허가신청) 제2조의2(수출추천대상양곡)	24
제13조의2 (輸入利益金の 徵收등)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등)	25 26

법	시행령	시행규칙	페이지
제14조 삭제	제14조의2(결손처분)		27
제15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穀價安定을 위한 糧穀의 出荷등)	제16조(곡기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28
제17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19조(糧穀加工業의 登錄 및 申告)	제21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등)	제3조 삭제	
		제4조(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등)	29
		제4조의2(양곡가공업의 신고등)	30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31
	제22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제조업의 범위)	
제20조(糧穀賣買業者등에 대한 命令)	제23조(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32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34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21조(營業停止등)		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35
제22조(米穀流通業의 육성)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37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제23조(양곡정책심의위원회)	제24조(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38
제24조(業務代行)	제25조(위원회의 구성)		
제25조 삭제	제26조(위원장의 직무등)		39
	제27조(위원회의 회의)		
	제28조(소위원회)		40
	제29조(의견청취등)		
	제30조(위원회 위원수당등)		41
第3章 補則			
제26조(融資 및 보조)	제31조(융자 및 보조대상사업)		
제27조(監督)	제32조(감독)		42
제27조의2(명예감시원)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43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44
제28조(청문)	제33조 삭제		45

법	시행령	시행규칙	페이지
제29조(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第4章 罰則			
제30조 삭제			47
제31조(罰則)			
제32조(벌칙)			48
제33조(罰則)			
제34조(罰則)			49
제35조(兩罰規定)			
제36조(過怠料)			50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51
		제12조(보고)	52
부칙	부칙	부칙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양곡관리법 □□ 1994. 1. 5 □□ □□ 法律 第04707號 全文改正 □□</p> <p>改正 1994.12.31 法律 第4842號 改正 1996. 8. 8 法律 第5153號 改正 1997. 1.13 法律 第5280號 改正 1997.12.13 法律 第5453號 改正 1999. 1.21 法律 第5665號 改正 2000.12.29 法律 第6305號 改正 2002. 1.14 法律 第6594號 改正 2002.12.30 法律 第6836號 改正 2004.12.31 法律 第7275號 改正 2005. 3.31 法律 第7432號 改正 2005. 3.31 法律 第7433號 改正 2006.12.28 法律 第8105號 改正 2007. 8. 3 法律 第8595號 改正 2008. 2.29 法律 第8852號</p> <p>第1章 總 則</p> <p>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양곡관리법시행령 □□ 1994. 4. 30 □□ □□ 大統領令 第14224號 □□ 전문개정</p> <p>改正 1994.12.23 大統領令 第14438號 改正 1994.12.23 大統領令 第14446號 改正 1994.12.31 大統領令 第14489號 改正 1995.12.30 大統領令 第14886號 改正 1996. 8. 8 大統領令 第15135號 改正 1997. 2. 1 大統領令 第15266號 改正 1997.12.31 大統領令 第15598號 改正 1999. 7.29 大統領令 第16491號 改正 1999.12.28 大統領令 第16646號 改正 2001. 7.30 大統領令 第17325號 改正 2002. 7.13 大統領令 第17673號 改正 2005. 6.30 大統領令 第18925號 改正 2007.12.31 大統領令 第20506號 改正 2008. 1.31 大統領令 第20576號 改正 2008. 2.29 大統領令 第20677號</p> <p>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p>	<p>양곡관리법시행규칙 □□ 1994. 5. 25 □□ □□ 農林水産部令 第1141號 □□ 全文改正</p> <p>改正 1994.12.31 農林水産部令 第1165號 改正 1995.12.30 農林水産部令 第1220號 改正 1996.12.28 農林部令 第1246號 改正 1997. 2. 6 農林部令 第1251號 改正 1999. 5.24 農林部令 第1331號 改正 1999. 8.21 農林部令 第1341號 改正 2000. 6.23 農林部令 第1366號 改正 2002. 7.27 農林部令 第1423號 改正 2005. 7. 1 農林部令 第1498號 改正 2006. 3.10 農林部令 第1518號 改正 2008. 2. 1 農林部令 第1579號 改正 2008. 3. 3 農林部令 第 1 號</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6.3.10, 2008.2.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전문개정 2005.3.31]</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4.12.31, 1999.1.21, 2005.3.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糧穀”이라 함은 米穀·麥類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穀類·薯類와 이를 原料로 한 粉碎物·粉末·澱粉類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政府管理糧穀”이라 함은 政府가 民間으로부터 買入하거나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糧穀을 말한다. 2의2. “공공비축미곡”이라 함은 미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을 말한다. 3. “糧穀賣買業者”라 함은 糧穀의 賣買 또는 賣買의 仲介를 業으로 하는 者를 	<p>제2조(곡류등) ①「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서류”란 다음 각 호의 곡류·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1.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울무·울무쌀·기장·기장쌀 2. 미곡·맥류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 3. 감자·고구마 <p>②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곡·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말한다.</p> <p>4. “糧穀加工業者”라 함은 糧穀을 原料로 하여 加工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申告한 者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糧穀의 관리</p> <p>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에는</p>	<p>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p> <p>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 것</p> <p>4. 전분류를 변성시킨 것</p> <p>[전문개정 1994.12.31]</p> <p>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p> <p>[본조신설 2005.6.30]</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공공비축미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08.2.29></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31]</p> <p>第4條(糧穀의 買入 및 先金支給등 <개정 1997.</p>	<p>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p> <p>제3조(생산자등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13>)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 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 또는 所有者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3.31, 2008.2.29></p>	<p>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2005.6.30, 2008.1.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p>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3. 기타 양곡의 매매업자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전문개정 1997.2.1] [시행일:2008.6.22]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糧穀의 買入約定을 체결하여 糧穀을 買入하는 경우에는 國庫金관리법 제26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買入約定金額의 일부(이하 “先金”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2.12.30, 2005.3.31, 2008.2.29></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金を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約定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先金에 約定利子를 加算하여 返納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05.3.31></p> <p>④삭제 <2005.3.31></p> <p>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先金, 約定利子 기타 買入約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p> <p>第5條(糧穀買入價格등의 決定)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p>	<p>제4조 삭제 <2005.6.30></p> <p>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중 선금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 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2.7.13, 2005.6.30, 2008.2.29></p> <p>②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선금에 가산하여 返納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약정량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7푼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p> <p>[본조신설 1997.2.1]</p> <p>[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1997.2.1>]</p> <p>제5조의2 삭제 <2005.6.30></p> <p>제6조 삭제 <2005.6.30></p> <p>제7조 삭제 <2005.6.30></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양곡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정책 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p> <p>②삭제 <2005.3.31></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부터 糧穀을 買入하는 경우의 糧穀買入價格은 所有者가 買入한 糧穀의 價格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附帶費用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7.1.13, 2005.3.31, 2008.2.29></p> <p>第6條 삭제 <2005.3.31></p> <p>第7條 삭제 <2005.3.31></p> <p>第8條 삭제 <2005.3.31></p> <p>第9條(政府管理糧穀의 販賣)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政府管理糧穀을 다음 各號의 用途에 따라 販賣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用途에 대하여는 그 代金を 收納하기 전에 糧</p>	<p>제8조 삭제 <2005.6.30></p> <p>제9조 삭제 <2005.6.30></p> <p>제9조의2 삭제 <2005.6.30></p>	<p>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0,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기타 운송료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p>[본조신설 1997.2.6]</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穀을 引渡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수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민수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6. 삭제 <2007.8.3> 	<p>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 법 제9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대체용 5. 수출용 <p>[전문개정 2008.1.31]</p> <p>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판매)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수납하기 전에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8.8, 2008.1.3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管理糧穀의 販賣價格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管理糧穀을 민수용으로 販賣하는 경우로서 政府管理糧穀의 流通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開入札의 방법에 의하여 販賣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수용과 공공용 2. 삭제 <2008.1.31> 3. 긴급구호용 4.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5. 수입대체용 6. 민수용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외상판매하는 경우의 기간 및 조건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p> <p>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안의 소수인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p> <p>제13조 삭제 <1999.7.29></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고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2008.2.29></p> <p>⑥삭제 <1999.1.21></p> <p>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p>		<p>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 자격 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별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2.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경우</p> <p>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p> <p>3. 당해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년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p> <p>4. 당해 양곡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의무 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동법 제1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p>[본조신설 2005.3.31]</p>		<p>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수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공공비축미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에서의 그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p> <p>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5.3.31]</p> <p>第11條(糧穀의 輸出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糧穀의 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糧穀을 輸入 또는 輸出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p>	<p>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곡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5.6.30]</p>	<p>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p> <p>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전문개정 2008.2.1]</p> <p>제1조의5(시장가격의 기준)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쌀값조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6.3.10, 2008.3.3></p> <p>[본조신설 2005.7.1]</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第12條(米穀등의 輸入許可등) ①「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原料로 한 粉碎物·粉末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糧穀(이하 “許可對象米穀등”이라 한다)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p> <p>②양허세율로 許可對象米穀등이 아닌 糧穀을 輸入하거나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糧穀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p> <p>③농림수산물부 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p>	<p>제14조(수입의 허가)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 것 <p>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5.6.30, 2008.1.31, 2008.2.29></p> <p>[전문개정 1994.12.31]</p>	<p>제2조(미곡수입허가신청)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p> <p>[전문개정 2008.2.1]</p> <p>제2조의2(수출추천대상양곡)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개정 2008.3.3></p> <p>[전문개정 2008.2.1]</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의한 糧穀의 輸出 또는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推薦物量·推薦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p> <p>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外國援助機關 또는 外國의 民間援助團體가 제공하는 許可 또는 推薦對象인 糧穀의 輸入을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물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하며, 그 協議를 거쳐 輸入認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8.2.29></p> <p>[전문개정 1994.12.31]</p> <p>第13條(輸入糧穀의 관리등) 농림수산물부장관은 糧穀의 需給調節과 輸入糧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 71조의 規定에 의한 割當關稅의 적용을 받아 糧穀을 輸入하는 者나 輸入된 당해 糧穀을 販賣 또는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사항은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の 賦課·徵收 對象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6.8.8, 2000.12.29,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輸入糧穀의 販賣價格·방법 및 시기 2. 輸入糧穀의 用途制限 3. 輸入糧穀의 使用量 및 在庫量에 관한 보고 <p>[전문개정 1994.12.31]</p> <p>第13條의2(輸入利益金の 徵收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아 糧穀을 輸入하는 者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p>		<p>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5.7.1, 2008.3.3></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内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輸入利益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企業豫算會計法 第3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納入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4.12.31, 2005.3.31, 2008.2.29></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p> <p>④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2. 가공용 미곡과 맥류중 보리 3. 두류중 대두·팥·녹두·땅콩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잡곡물·귀리·울무·밀의 분쇄물·분말·압착물·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p>[본조신설 1994.12.31]</p> <p>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등) ①농림수산물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당해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부족한 때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채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자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p>[본조신설 1994.12.31]</p> <p>第14條 삭제 <1999.1.21></p> <p>第15條 삭제 <1999.1.21></p>	<p>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3호에서 “채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자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납자가 사망한 때 	<p>으로 한다. <개정 1996.12.28, 2008.3.3></p> <p>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1,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 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p>[본조신설 1994.12.31]</p> <p>제3조 삭제 <1999.8.21></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第16條(穀價安定을 위한 糧穀의 出荷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糧穀의 出荷 및 價格을 調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業協同組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農業協同組合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糧穀의 買入 및 販賣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買入資金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融資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2008.2.29></p> <p>②삭제 <1999.1.21></p> <p>③삭제 <2005.3.31></p> <p>④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糧穀의 需給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政府의 買入量외의 일정량에 대하여 政府買入價</p>	<p>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때</p> <p>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p> <p>[본조신설 2005.6.30]</p> <p>제15조 삭제<1999.7.29></p> <p>제16조(곡가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곡가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8.8, 2008.2.29></p> <p>1. 농수산물유통공사</p> <p>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p> <p>3. 기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p> <p>제17조 삭제<1999.7.29></p> <p>제18조 삭제<1999.7.29></p> <p>제19조 삭제<1999.7.29></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格과 産地價格의 差額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糧穀을 買入하는 者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p> <p>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價格과 産地價格의 差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p> <p>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등으로 하여금 糧穀을 買入하게 하는 경우에 第4條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예에 따라 買入約定締結 및 先金支給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8.2.29></p> <p>第17條 삭제 <1999.1.21></p> <p>第18條 삭제 <1999.1.21></p> <p>第19條(糧穀加工業의 登錄 및 申告<개정 1999.1.21>)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糧穀加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 또는 申告하여야 한다.<개</p>	<p>제20조 삭제<1999.7.29></p> <p>제21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2008.2.29></p>	<p>제4조(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 또는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정 1999.1.21, 2002.1.1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8.2.29> ③삭제 <1999.1.21></p>	<p>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원료곡을 원료로 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을 말하며, 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 ②양곡가공업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정업(정미·정맥·밀쌀·압맥 또는 할맥을 하는 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2008.2.29> ③양곡가공업중 주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된장·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에 한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주세법」</p>	<p>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2002.7.27> 1.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2002.7.27> ③삭제<1999.8.21> 제4조의2(양곡가공업의 신고등) ①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곡도정업신고서에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전문개정 1999.7.29]</p> <p>제22조 삭제<1999.7.29></p>	<p>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7></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양곡도정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7></p> <p>[본조신설 1999.8.21]</p> <p>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제조업 및 도정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전문개정 2008.2.1]</p> <p>제6조 삭제 <1999.8.21></p> <p>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28, 1999.8.21, 2008.2.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20條(糧穀賣買業者등에 대한 命令) ①농림수산물부장은 糧穀의 需給調節과 流通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糧穀賣買業者에 대하여 기간과 地域을 정하여 糧穀生産者에게 불이</p>	<p>제23조(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수산물부장은 양곡매매업자 또는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p>	<p>2008.3.3>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24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20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8.2.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販賣價格의 게시 2. 삭제 <1999.1.21> 3. 삭제 <2005.3.31>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糧穀의 加工方法改善, 加工生産品の 品質保障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主務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糧穀加工業者에 대하여 기간과 地域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3.31,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加工施設의 개선 2. 加工收率·加工方法 및 加工生産品の 規格制限 3. 삭제 <1999.1.21> 4. 包裝規格·包裝資材 및 포장방법의 제한 	<p>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5. 加工生産品에 대한 標識의 첨부</p> <p>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①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31]</p> <p>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p>		<p>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 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p> <p>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31]</p> <p>第21條(營業停止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糧穀加工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을 정지하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2.1.14, 2007.8.3,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p>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양곡의 명칭·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 2.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Most”·”Special”, “特”·”最高”,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4. 수상·인증·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5.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p> <p>6.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p> <p>8.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p> <p>9.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p>10.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서 따로 주무관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요청을 받은 주무관</p>		<p>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p> <p>[본조신설 2005.7.1]</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2008.2.29></p> <p>④삭제 <1999.1.21></p> <p>第22條(米穀流通業의 육성) ①농림수산물부장관은 米穀의 流通構造改善·品質向上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生産者로부터의 米穀의 買入, 買入한 米穀의 건조·選別·보관·加工 및 販賣등 종합적인 米穀의 流通機能을 담당하는 米穀流通業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p> <p>②농림수산물부장관은 農業協同組合 기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米穀의 流通機能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米穀綜合處理場등 米穀의 건조·보관·加工·流通·販賣施設의 設置 및 米穀의 買入에 필요한 資金의 일부를</p>		<p>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p> <p>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하여 원료비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12.28, 2008.3.3></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豫算의 범위안에서 融資하거나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2008.2.29></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 및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融資金의 利子等 融資條件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1.13, 1999.1.21, 2008.2.29></p> <p>第23條(양곡정책심의위원회<개정 2005.3.31>)</p> <p>①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양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에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31, 2008.2.29></p> <p>②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p> <p>第24條(業務代行)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政府管理糧穀의 輸出·輸入·賣買·貯藏·出納·輸送 및 加工 및 糧穀의 買入約定</p>	<p>제24조(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곡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곡정책과 관련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부의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05.6.30]</p> <p>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締結・先金支給等の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당해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2008.2.29> 第25條 삭제 <1999.1.21></p>	<p>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은 양곡생산자·양곡소비자와 양곡유통 및 정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8.8, 2005.6.30, 2008.2.29></p> <p>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2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6.8.8, 2008.2.29></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p> <p>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31, 2008.2.29></p> <p>제2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특정사안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p> <p>제29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3章 補則</p> <p>第26條(融資 및 보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糧穀의 需給調節, 食生活의 개선, 糧穀의 加工·보관·流通改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資金을 融資하거나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p>	<p>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0조(위원회 위원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1조(융자 및 보조대상사업)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판매하는 사업 중 원료양곡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결손이 초래되는 사업 2. 정부가 국민식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사업 3. 양곡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업 	

법	시행령	시행규칙
<p>第27條(監督)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糧穀의 所有者·糧穀賣買業者·糧穀加工業者, 糧穀을 輸出·輸入·보관 또는 輸送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6.12.28, 2008.2.29></p>	<p>4. 양곡유통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양곡관리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1.31, 2008.2.29></p> <p>제32조(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접수기관·보고기한 및 보고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7.29,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곡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양곡소유량 2.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양곡의 매매 가격 및 곡종별 재고량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28></p> <p>제27조의2(명예감시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곡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p>	<p>3.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는 원료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포장·판매·재고량</p> <p>4. 양곡의 수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수출·입국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p> <p>5. 양곡의 보관업자에 대하여는 보관양곡의 품위상태와 재고량, 입·출고량 및 사고량</p> <p>6. 양곡의 수송업자에 대하여는 수송양곡의 발·착지별 수송량과 하주명·보관량·사고량·수송구별 및 수송능력</p>	<p>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2.1]</p> <p>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p> <p>①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5.3.31]</p> <p>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p>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5.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p>②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대한 감시·신고 2.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3.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신고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원산지 표시 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 양곡의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한 자 [본조신설 2005.3.31]</p> <p>第28條(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糧穀加工業者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7.12.13]</p> <p>第29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農林水産식품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場·광역市場·도지사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2002.1.14></p>	<p>제33조 삭제<1997.12.31></p> <p>제34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特別市場·광역市場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8.8, 1997.2.1, 2002.7.13, 2005.6.30, 2008.1.31,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5.6.30> 2. 삭제 <2005.6.30>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政府관리양곡 중 官收用·가공용·공공용 양곡의 판매 4. 법 제27조의 規定에 의한 양곡의 所有者·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 	<p>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p> <p>③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農林水産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p> <p>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農林水産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p> <p>[본조신설 2005.7.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p> <p>5. 삭제 <2005.6.30></p> <p>6. 삭제 <2005.6.30></p> <p>②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5.6.30, 2008.2.29></p> <p>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에 한한다)과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p> <p>2.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p> <p>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한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4章 罰則</p> <p>第30條 삭제 <1999.1.21></p> <p>第31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輸出·輸入 한 糧穀을 時價로 換算한 價額의 3倍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p> <p>1.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對象米穀등을 輸入한 者</p> <p>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糧穀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p> <p>②第1項의 경우에는 輸出하거나 輸入한 糧穀을 沒收하고,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糧穀을 時價로 換算한 價額을</p>	<p>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5.6.30></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追徴한다.</p> <p>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p>[전문개정 2005.3.31]</p> <p>第3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6.8.8, 1997.1.13, 1999.1.21, 2005.3.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2005.3.31>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對象인 糧穀加工業을 영위한 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第2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 여 糧穀加工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당 해 營業을 계속한 者</p> <p>第3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4.12.31, 1996.8.8, 1999.1.21, 2005.3.31, 2006.12.28></p> <p>1. 第1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 반한 者</p> <p>2. 제20조의3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거 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廣告를 한 자</p> <p>3. 제27조제1항의 規定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命令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 원의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第35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 條 내지 第3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개정 1999.1.21></p> <p>第3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1.21, 2005.3.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1999.1.21>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對象인 糧穀加工業을 영위한 者 3. 第2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제20조의2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6.8.8, 2002.1.14, 2008.2.29></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p>	<p>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 36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는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p> <p>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2.7.13, 2007.12.31, 2008.2.29></p> <p>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30></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p>	<p>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附 則 <제4707호, 1994.1.5></p> <p>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後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 및 이와 관련되는 糧穀加工業에 관한 規定은 公布後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p> <p>第2條(廢止法律) ①法律 第2237號 糧穀管理基金法은 이를 廢止한다.</p> <p>②이 법 施行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糧穀管理基金의 負債 및 資產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第3條(糧穀賣買業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p>	<p>부 칙 <제14224호, 1994.4.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정업자”로 한다.</p>	<p>제12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의 등록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 2002.7.27></p> <p>부 칙 <제1141호, 1994.5.2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165호, 1994.12.31></p> <p>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220호, 1995.12.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可를 받은 糧穀賣買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糧穀賣買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p> <p>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糧穀加工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糧穀加工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p> <p>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産物價格維持 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5條第2項을 削除한다.</p> <p>②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13條第1項중 “糧穀管理法 第15條의3 및 第16條”를 “糧穀管理法 第18條 및 第19條”로 한다.</p> <p>③農村近代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52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削除한다.</p> <p>④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糧穀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p> <p>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p>	<p>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 1996.12.2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251호, 1997.2.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1호, 1999.5.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p> <p>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국립농산물 검사소지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으로 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附 則 <제4842호, 1994.12.31> 이 法은 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한마라 케쉬協定の 효력이 國內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施行한다.</p> <p>附 則(정부조직법) <제5153호, 1996.8.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p> <p>第2條 省略</p> <p>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省略 □糧穀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第1項, 第8條, 第9條第1項 本文·第2項 내지 第6項, 第10條, 第11條, 第12條, 第13條 本文, 第13條의2第1項, 第14條, 第16條, 第17條 本文, 第20條第1項 本文·第2項, 第22條第1項·第2項, 第23條第1項, 第24條, 第25條,</p>	<p>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p> <p>부 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 1994.12.2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10조제2항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소규모도정업 비고란 제3호 및 대규모도정업 비고란 제6호중의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p> <p>부 칙 <제1341호, 199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1366호, 2000.6.2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第26條, 第27條第1項, 第29條, 第33條第1號, 第34條第2號 및 第36條第2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23條第1項중 “農林水産部”를 “農林部”로 한다. 第12條第2項, 第13條의2第1項·第2項, 第18條第2項第2號, 第19條第2項, 第21條第1項, 第22條第3項 및 第25條第1項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내지 □省略</p> <p>第4條 省略</p> <p>附 則 <제5280호, 1997.1.13> 이 법은 1997年 2月 1일부터 施行한다.</p> <p>附 則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p> <p>부 칙 <제14489호, 1994.12.31>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4886호, 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 1996.8.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정에관한법률 제44조”를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③생략</p> <p>부 칙 <제1423호, 2002.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498호, 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518호, 200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579호, 200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양곡가공업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第2條 省略</p> <p>附 則 <제5665호, 1999.1.21></p> <p>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p> <p>②(糧穀加工業 登記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糧穀加工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19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糧穀加工業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관세법) <제6305호, 2000.12.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p> <p>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關稅法 第16條”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p> <p>⑫내지 □생략</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p> <p>□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제6호·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제4호,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1조제1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p> <p>제24조중 “농림수산부”을 “농림부”로 한다.</p> <p>제21조 본문·제1호, 제22조 및 제35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p> <p>□내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부 칙 <제15266호, 1997.2.1></p>	<p>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3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p> <p>부 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p> <p>□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제2조의2, 제</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8조 생략</p> <p>부 칙 <제6594호, 2002.1.14></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 2002.12.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p> <p>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 1997.12.31></p> <p>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6491호, 1999.7.29></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p>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p>부 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p>	<p>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1조의2제5호, 제2조의3제4호, 제2조의4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1, 별표 2 제2호나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p> <p>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 부터 □ 까지 생략</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4조제2항중 “豫算會計法 第68條”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p> <p>⑫내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 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7275호, 2004.12.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p> <p>②糧穀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2항중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p> <p>③생략</p> <p>제5조 생략</p>	<p><제16646호, 1999.12.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p> <p>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3.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p>⑧및 ⑨생략</p> <p>제5조 생략</p> <p>부 칙 <제17325호, 2001.7.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부 칙 <제7432호, 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p>	<p>부 칙 <제17673호, 2002.7.13>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8925호, 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p> <p>부 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 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20576호, 2008.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p> <p>제6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p> <p>부 칙(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433호, 2005.3.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2항중 “糧穀管理特別會計”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p> <p>②생략</p> <p>제8조 생략</p>	<p>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 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 2008.2.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p> <p>□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p> <p>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2항,</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제8105호, 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8595호, 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 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input type="checkbox"/> 까지 생략</p>	<p>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13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제2항·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input type="checkbox"/> 부터 <input type="checkbox"/> 까지 생략</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물부”로 한다.</p> <p>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農林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農林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 부터□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별표] <개정 2008.1.31>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35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경우 최저금액은 5만원이고, 가중부과하는 경우 과태료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인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자	법 제36조 제1항제2호	100만원
나.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36조 제1항제3호	50만원
다.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법 제36조 제1항제4호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제2호다목의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가.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할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저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1) 가목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 2) 과태료부과금액의 최저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부과한다.

4. 제2호다목의 과태료의 부과방법

- 가. 양곡매매업소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양곡가공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곡매매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양곡가공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거나 운반 중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가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1] <개정 2008.3.3>

정부관리양곡을 용도별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제1조의3 관련)

용 도	매입자격기준	비고
1. 관수용	○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등 급식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2. 가공용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주류제조업체로서 쌀소비 능력이 월간 10톤 이상이고, 부대시설 면적을 제외한 제조시설 면적이 100㎡ 이상인 자.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쌀소비능력에 관계없이 제조시설 면적이 33㎡ 이상으로 한다. ○ 식품제조가공업체중 습식쌀가루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기계화된 세척·불림·분쇄·건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공공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단체·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단체·기관을 제외한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지역교육청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이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쌀 가공식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4. 민수용	○ 도정 등 가공능력, 자본금, 매출액, 판매점포, 쌀소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5.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사료용, 수입대체용, 수출용	○ 필요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자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08.3.3>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처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법령	매입자격 제한기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가.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법 제9조의2	6개월	1년	-
나.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	법 제9조의2	1년	-	-
다. 당해 양곡에 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9조의2	3개월	6개월	1년
라. 당해 양곡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의무 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동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의2	3개월	6개월	1년
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조의2	3개월	6개월	1년
바. 양곡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9조의2	3개월	6개월	1년

[별표 3] <개정 2008.2.1>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제5조 관련)

1. 제분업 및 제조업

구 분		시설기준
제분업	밀가루	가. 고르는 장치 :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다. 체장치 :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라. 시험장치 : 자체 품질관리에 필요한 회분·단백질 및 사분의 분석시설
	옥수수 그 밖의 곡분	가. 고르는 장치 :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다. 체장치 :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제조업	옥수수전분 및 옥수수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 제조업,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제조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시설

2. 도정업

구 분	시설기준
미곡도정	미곡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맥류도정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비고

- 가. 도정업은 미곡도정 또는 맥류도정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나. “미곡도정”이란 벼를 현미 또는 쌀로 도정하거나, 현미를 쌀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맥류도정”이란 보리 또는 밀을 정맥·밀쌀·압맥 또는 할맥으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이 시설기준 이상으로 하는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08.2.1>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7조의3 관련)

1. 표시사항

가. 의무표시사항

1) 품목

가)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

나)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된 모든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되, 혼합된 품목 또는 품명이 다섯 가지를 넘으면 혼합비율 또는 중량이 많이 혼합된 순으로 다섯 가지 이상을 표시

다) 여러 가지 양곡 또는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품목별로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과·부족 허용오차는 10퍼센트 이하로 함.

2) 생산연도(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가) 원료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나)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

3) 중량

실제 중량을 표시

4)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가)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 표시가 가능한 다른 품종과의 혼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나) 국내산으로서 품종명을 모를 경우에는 계통별(일반계 또는 다수계)로, 외국산으로서 품종을 모를 경우에는 계통별(단립종·중립종 또는 장립종)로 표시

다) 품종·계통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계통별 혼합비율을 표시 또는 “혼합”으로 표시

5) 도정 연·월·일(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가)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나) 도정일자가 다른 쌀·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6)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

나. 권장표시사항(멥쌀의 경우에만 해당함)

1) 품위 및 품위의 규격: 품위는 특, 상 또는 보통으로 표시하되, 품위의 규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품질 및 품질의 기준: 품질은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순도를 표시하되, 품질의 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표시방법

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1) 위치

- 가) 포장 앞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양곡 표시사항의 일괄표시 예시에 따라 표시하되, 권장표시사항인 쌀 품질표시는 뒷면에 표시할 수 있음.
- 나)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앞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뒷면에 표시할 수 있음.
- 다) 품목(또는 품명) 및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자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예시)>

생산연도	2007년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중량	20kg	주소	○○도 ○○군 ○○면 ○○리 ○○번지
품종	일품	상호명(성명)	○○미곡종합처리장
원산지	○○군	전화번호	031) ○○○-○○○○
도정 연월일	2008.2.4.	품위	특

* 원산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름

쌀 품질 표시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 이하	()% 이상	()% 이상
()~()%	()~()%	()~()%
()% 이상	()% 이하	()% 이하
<p>좋은 쌀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완전립 비율은 높을수록 밥맛이 좋음. • 품종순도가 높을수록 품종고유의 밥맛을 느낄 수 있음. 		

- 2) 글자크기: 12포인트(18급) 이상으로 하되, 1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8포인트(12급)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3) 색도: 포장재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
- 4)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고무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5) 쌀 품질 표시방법
 - 가)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란에 “○”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표기

나) 보관·유통과정에서 탈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품목·중량·생산자·주소·상호 또는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 1) 표시방법: 용기표면, 뚜껑 등에 표시
- 2) 용기표시: 가로 10cm × 세로 5cm 이상
- 3) 뚜껑표시: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다. 표시 문자

- 1)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 2) 영문 또는 한문 등으로 표시하려면 한글표시 다음에 ()로 표시

[별표 5] <개정 2008.2.1>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 적발 일로 한다.
-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1) 고의가 있는 경우 (2) 과실인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6월 경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고의가 있는 경우 (2) 과실인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6월 경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라.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마.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위 반 사 항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바.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사.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아. 「농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자. 「농산물품질관리법」제17조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차.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0호	등록취소		

[별표 6] 별표 6은 별표 2로 이동 <2008.2.1>

[별표 7] 별표 7은 별표 4로 이동 <2008.2.1>

미국등수입허가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수입물품의명세						
④ HS번호	⑤ 품명	⑥ 규격	⑦ 단위 및 수량	⑧ 단가	⑨ 금액	⑩ 용도
⑪ 원산지			⑫ 선적항		⑬ 도착항	
⑭ 수입기한						
⑮ 주거래외국환은행						
<p>「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국 등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						
<p>※ 작성방법</p> <p>1. ⑩ 용도는 식용, ○○제조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p> <p>2. ⑪ 원산지는 지식경제부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명을 기재합니다.</p> <p>3. ⑭ 수입기한은 년, 월까지 기재합니다.</p> <p>4. ⑮ 주거래외국환은행은 수입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환은행을 기재합니다.</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뒤 쪽)

미국등수입허가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물식품부	처리기관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없 음		
근거법규	<p>○ 「양곡관리법」 제12조(미국 등의 수입허가 등)</p> <p>①「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 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국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분말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국등”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국등의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의 허가)</p> <p>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국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국 등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유의사항	<p>○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등을 수입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한 미국등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게 됩니다.</p>		

[서식 2] 삭제 <1999.8.21>

[서식 3] 삭제 <1999.8.21>

[서식 4] 삭제 <1999.8.21>

(뒤 쪽)

양곡가공업등록신청안내

수수료	없 음	처리기관(부서)	시·군·구(양곡담당부서)
제출하는곳	시·군·구	처리기간	제분업·제조업 : 14일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19조 ①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의사항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3조제2호).		
작성방법	· ⑥란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 제조업 등으로 기재합니다. · ⑦란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제분·제조)을 기재합니다. · ⑨란은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철골조스레트, 시멘트바닥 등)를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 ⑬란은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제분업 중 밀가루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능력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99.8.21, 2002.7.27>

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

등록·신고 번호	등록·신고 연월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 및 업종구분	가공능력 (M/T)	비고

27273-05811비
99.6.11 개정승인

364mm×25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2.7.27>

등록번호 제 호	
양 곡 가 공 업 등 록 증	
업체명 :	사진 2.5×3cm
대표자성명 :	
소재지 :	
업체구분 :	
등록업종 :	
가공능력(1일 시간기준, M/T) :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 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27273-05911일
94.4.13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서식 8] 삭제 <1999.8.21>

[서식 8] 삭제 <1999.8.21>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999.8.21, 2002.7.27>

업체명 :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																				
업체 구분	시설 구분	동력시설						기계시설												
		전동기		발동기		계		업종 구분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형식	마력(대)	형식	마력(대)	마력	대													

※ 작성방법

1. 업체구분은 제분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업종구분은 밀가루 및 옥분 기타 곡분 제분, 옥수수전분 및 전분당 제조,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7273-01511일
99.6.11 개정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2.1>

양 곡 도 정 업 신 고 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업 체	④ 상 호					
	⑤ 소재지					
가공능력(M/T) (1일 8시간 기준)	구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가공능력					
<p>「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곡도정업의 신고를 합니다.</p> <p>년 월 일</p> <p>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릅니다) 1부					

※ 양곡도정업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수수료	없음
처리기관(부서)	시·군·구(양곡담당부서)	처리기간	3일
근거법령	<p>○ 「양곡관리법」 제19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p> <p>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유의사항	<p>○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도정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p>		

210mm×297mm[신문용지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1999.8.21, 2002.7.27>

제 호 양 곡 도 정 업 신 고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 호 : 영업장의소재지 : 영업의종류 :					
구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가공능력(M/T) (1일 8시간 기준)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7273-06411일
99.6.1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앞 쪽)

<p>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양곡관리조사공무원증</p> <p>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p> <p>위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양곡관리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p> <p>* 바탕색: 연노랑색</p>	<p>사 진</p> <p>(2.5×3cm)</p>
---	-----------------------------

90mm×55mm[보존용지(1종)120g/m²]

(뒤 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 양곡매매업자 ·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 · 수입 · 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앞 쪽)

제 호 양곡관리조사공무원증	사 진 (2.5×3cm)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양곡관리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 바탕색: 연노랑색	

90mm×55mm[보존용지(1종)120g/m²]

(뒤 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로 한정한다)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목차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93
제2조(정의)	제2조(논농업의 범위)	제2조(수확기 쌀값조사 방법)	94
	제3조(쌀의 수확기)		
	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95
제3조(농업인들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			
제2장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96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99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등)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102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제5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제5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103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제6조(목표가격의 산정 등)		10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제7조(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제6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105
제12조(현지확인조사)			106
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 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8조(위원장의 직무)		107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지급제한 및 등록제한기준)	108
	제10조(실무위원회)		
	제11조(간사)		
	제12조(수당 등)		
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3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110
제1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111
제4장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제17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112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4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조성)		113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20조(기금의 용도) 제21조(기금운용계획) 제22조(기금계정의 설치) 제2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4조(차입금)	위탁) 제16조(기금의 결산보고)		114
제5장 보칙 제25조(직접지불제도의 정보화)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8조(보고)		115 116
부 칙	부 칙	부 칙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 및운용에관한법률 □□ 2002. 12. 11 □□ □□ 법률 6764호 제정□□</p> <p>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2005. 3. 31 □□ □□ 법률 제7433호 제정 □□ 전문개정</p> <p>개정 2005.12.29 법률 제7775호 개정 2007. 4.11 법률 제8352호 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개정 2008. 3.21 법률 제8929호</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p>	<p>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 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2002. 12. 30 □□ □□ 대통령령 제17850호 □□ 제정</p> <p>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5. 6. 30 □□ □□ 대통령령 제18926호 □□ 전문개정</p> <p>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 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002. 12. 31 □□ □□ 농림부령 제1432호 □□ 제정</p> <p>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05. 7. 1 □□ □□ 농림부령 제1503호 □□ 전문개정</p> <p>개정 2008. 3. 3 농림부령 제1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확기 쌀값조사 방법)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쌀값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2. “논농업”이라 함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p> <p>3. “목표가격”이라 함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p> <p>4. “고정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5. “변동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p>	<p>제2조(논농업의 범위) ①「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이라 함은 농업인등(「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을 말한다.</p> <p>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논농업은 벼·연근·미나리 또는 왕골을 재배한 경우를 말한다.</p> <p>제3조(쌀의 수확기) 법 제2조제3호·제5호,</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농업인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제3조(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③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p> <p>제2장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p> <p>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p>	<p>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쌀의 수확기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법 제2조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곡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수확기의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①농림수산물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p> <p>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8.3.21></p> <p>1.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지역 안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p> <p>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신설 2008.3.21></p> <p>1. 경지정리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p> <p>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p> <p>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p>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p>		<p>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등) ①「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p> <p>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p>③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에 교부받은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내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의 규정</p>		<p>에는 신청인의 변경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p> <p>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하고, 읍·면장</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p> <p>②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p>	<p>제5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①법 제9</p>	<p>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읍·면장을 거쳐 양도·임대 또는 사용대한 농업인등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p> <p>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이웃농지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산정기준·방법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한다. <개정 2008.3.21></p>	<p>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정함에 있어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보다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고정직접지불금은 당해연도말에 농업인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p>	<p>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p> <p>3.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p> <p>4.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방법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p>	<p>제6조(목표가격의 산정 등)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기존 목표가격 산정시 고려한 3개년도 쌀의 수확기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과 그 이후 3개년도 쌀의 수확기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과의 변동비율을 기존 목표가격에 곱하여 산정한다.</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변경되는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6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p> <p>1.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p> <p>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p> <p>③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현지확인조사) ①농림수산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7조(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매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고시하는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에 1헥타르당 쌀의 생산량과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벼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p>	<p>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p> <p>1. 농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p> <p>2. 화학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토양 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기준</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안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헥타르당 쌀의 생산량은 쌀 61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로 고정한다.</p> <p>④변동직접지불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농업인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②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0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담당 실·국장이 된</p>	<p>제7조(지급제한 및 등록제한기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p> <p>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가소득 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p> <p>②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p>	<p>다. <개정 2008.2.29></p> <p>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 <p>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출석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p>	<p>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p> <p>③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2.29></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p> <p>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가. 농업인단체의 대표로서 5인 이내</p> <p>나. 「소비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으로서 5인 이내</p> <p>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5인 이내</p> <p>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①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8.2.29></p> <p>②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장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p> <p>제17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①정부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p> <p>제1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한국은행·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p> <p>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p>	<p>제14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조성) 법 제18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p> <p>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3.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p> <p>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p> <p>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경비</p> <p>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p> <p>5. 그 밖에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p> <p>제21조(기금운용계획)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소득안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3. 기금사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22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p>	<p>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6조(기금의 결산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2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p>	<p>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p> <p>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개정 2008.2.29> 제24조(차입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5조(직접지불제도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p>	<p>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 <개정 2008.2.29> ②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 이용가능여부의 인정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등록증 교부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및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임차·사용차에 관한 신고수리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6.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성분검사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일부 또는 전액의 지급금지, 지급금 회수 및 등록제한 <p>②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의한 잔류농약검사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p> <p>③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의 권한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p> <p>제18조(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를 거쳐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7433호, 2005.3.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정하는 목표 가격·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정할 수 있다.</p> <p>제3조(쌀소득보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쌀소득보전기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p>	<p>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공사의 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18926호, 2005.6.30></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p> <p>제3조제2항중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및 논농업직접지불제도”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로 한다.</p> <p>제4장(제24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p> <p>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01503호, 2005.7.1></p> <p>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p> <p>□ 쌀소득등의 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으로 본다.</p> <p>제4조(쌀소득보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쌀소득보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p> <p>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쌀소득보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2004년산 쌀에 대한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p> <p>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p>	<p>2. 환경농업보조금의 선정신청에 관한 사항</p> <p>3. 기타 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6조(소요경비의 지급) 농림부장관은 공사에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p>	<p>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input type="checkbox"/> 부터 <input type="checkbox"/> 까지 생략</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2항중 “糧穀管理特別會計”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p> <p>②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의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3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p>	<p>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p> <p>□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중 “농림부 소속 3급 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p> <p>□내지 □생략</p> <p>부 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p> <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 중 “농림부 차관보”를 “농림</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 2005.12.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p> <p>⑩생략</p>	<p>수산식품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p> <p>제13조제2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p> <p>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 부터 □ 까지 생략</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5조 생략</p> <p>부 칙(농지법) <제8352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내지 □생략</p> <p>제16조 생략</p> <p>부 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p> <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p> <p>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2항제5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5호,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4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3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p> <p>□ 부터 □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 칙 <제8929호, 2008.3.2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등록제한에 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p>		

[별표 1]

쌀 값 조사 방법 (제2조관련)

조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지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수축산물유통통계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하는 시·군
조사대상	○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게 신고한 양곡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중 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통량 등을 감안하여 선정
조사내용	○ 조사대상업체의 당해연도산 대표적인 정곡출하가격(80kg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출하가격에서 운임을 제외한 공장도 출하가격으로 조사 ○ 조사대상업체별 판매물량 비중이 제일 많은 브랜드를 조사하되, 특이농법 제배, 특수물질 첨가 등 일반쌀보다 상당수준 고가브랜드를 제외한다.
조사시기	○ 연중조사를 실시하되, 수확기조사는 해당연도 10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4개월로 함
조사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쌀값조사원이 장부열람, 방문취조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조사주기	○ 농수축산물유통통계조사지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하는 주기를 적용

[별표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기준 (제7조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1.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	3년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 중 1개를 위반한 경우 나.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 중 2개를 위반한 경우 다.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 중 3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고정직접지불금 1/4 감액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제6조제2항 각 호 중 어느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나. 제6조제2항 각 호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변동직접지불금 1년간 전부 미지급 변동직접지불금 2년간 전부 미지급	

비고 :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제한기간은 년 단위로 경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② 신청청 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소유 (지·타)	⑤면적(m ²)		⑥ 농농업 이용 기간	⑦농지이용면적(m ²)		⑧ 전경작자 (변경신고시)	⑨음·면적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번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벼이용	벼이용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 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영양도인(변경신고의 경우)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수료
	없음

- 농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경작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자격증명, 패배·임대차계약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농지에 벼 재배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농지보상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패배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음·면적 확인 결과*

⑩신청자격 유무(○,× 표시)										담당 공무원						
합계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⑪지급 대상격 농지	구분	면적 (m ²)	총계	벼	벼의	휴경	총계	벼	벼의	휴경	계	벼	벼	이외	휴경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신청인 기재상 주의사항

※ “*” 표시된 항목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 대상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로 논농사를 짓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 ④란은 농지소유기준으로 본인소유 본인경작시는 “자”로 타인소유 임차경작시는 “타”로 기재합니다.
-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⑥란은 “지경”의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합니다.
- ⑦란은 대상농지에 벼재배, 벼외 타작물재배, 휴경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 ⑧란은 “변경신고시” 변경신고 이전 경작자(또는 지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읍·면 확인시 주의사항

- ⑨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자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첨부서류,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꺀”,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 ⑩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x”로 표시합니다.
- ⑪란은 적격 농지로 확인된 농지의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업진흥 지역안(m)	농업진흥 지역밖(m ²)	비재배 면적(m ²)	변경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계활용품))

양 곡 관 리 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08년 4월 일 인쇄
2008년 4월 일 발행

발행처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 식량정책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 화 : 02 - 500 - 1919
팩 스 : 02 - 507 - 2306
<http://www.mifaff.go.kr>

인 쇄 : 비 전 기 획
전 화 : 02 - 504 - 1555
팩 스 : 02 - 504 - 1553
E-mail : Vision825@naver.com